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병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077

발의연월일: 2021. 11. 2.

발 의 자: 강병원 · 임호선 · 오영환

권칠승 · 김민석 · 한준호

김병기 · 최혜영 · 김영호

김성주 · 우상호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비롯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발달재활서비스 및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범죄 전력 조회 근거가 없어 성범죄·학대 등과 관련한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노출이 매우 큰 상황임.

또한,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규정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(장애아 돌보미)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범죄경력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의 마련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, 장애아

돌보미의 자격·결격사유·자격정지·자격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(안 제21조의2 신설).
- 나.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, 결격사유,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, 명의대 여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).
- 다.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돌봄 및 일시적 휴시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규정(안 제30조제6호 신설).
- 라.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, 장애아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하여 규정함(안 35조의2신설).
- 마.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 신설에 따른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 규정함(안 제41조제1항제1호).
- 바. 법률 개정 취지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일부 개정내용을 규정함(부칙 제4조).

법률 제 호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2(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.
 - 1.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제공자 또는 운영자
 - 2.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」제2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 취소에 원인을 제공 한 운영자 또는 종사자

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2(장애아 돌보미의 자격)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(이하 "장애아 돌보미"라 한다)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.
- 제24조의3(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)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

다.

- 제24조의4(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) ① 시·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 - 가.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 - 나.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 - 다.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 히 하는 행위
 - 라.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
 - 마.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4호가 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
 - 2. 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
 - 3.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·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
 - 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
 - ② 시·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제24조의3에 해당하게 된 경우

- 2.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9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
- 3.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
-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4조의5 (명의대여 등의 금지) ① 장애아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 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- 제30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6.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35조의2(관계기관 간 업무협조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은 제21조의2 또는 제24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

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24조의5를 위반한 사람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·보고를 거부하 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 또는 조사·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 한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되는 사람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자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과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장애아 돌보미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3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제30조제1호.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

제8호에 따른 복지제공기관

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6.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제30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복지제 공기관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/u>	제21조의2(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
	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)
	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	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
	제공기관을 운영하거나 발달재활
	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로 채
	용될 수 없다.
	1.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
	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
	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제공자
	또는 운영자
	2.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
	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
	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
	취소된 경우 그 등록 취소에
	원인을 제공한 운영자 또는 종
	<u>사자</u>
<u> <신 설></u>	제24조의2(장애아 돌보미의 자격)
	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에
	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
	람(이하 "장애아 돌보미"라 한
	다)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
	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장애아 돌
	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제24조의3(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

<신 설>

- 유)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.
- 제24조의4(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) ① 시·도지 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 돌 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 - <u>가.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</u> <u>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</u> 위
 - <u>나.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</u> <u>박하는 행위</u>
 - 다.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 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를 소홀히 하는 행위
 - 라.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 한 절도 등 불법행위
 - <u>마.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</u> 서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

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 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

- 2. 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
- 3.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·유인 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
- 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 ② 시·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제24조의3에 해당하게 된 경
 오
-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9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
- 3. 「장애인복지법」
 제2조제4항

 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

 처벌을 받은 경우

<신 설>

제30조(복지지원 제공기관) 다음 제30조(복지지원 제공기관) -----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 지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~ 5. (생 략) <신 설>

6. • 7. (생략)

<신 설>

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·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

수료증을	대여하여서는	아니	된
다.			

②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 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 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7. · 8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

제35조의2(관계기관 간 업무협조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제21조의2 또는 제24조의 3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 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 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 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1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사유 없 제4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한 자 또는 조사·검사를 거부·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u>다.</u>

- 1. 제24조의5를 위반한 사람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 항에 따른 자료제출·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 또는 조사·검사를 거부·방해 하거나 기피한 사람

② (생략)